

##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전력전자학회(이하 ‘학회’라 함)와 관련된 연구가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사회 일반의 이익과 윤리를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연구에 있어서의 제반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연구의 진정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2. 연구 및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연구윤리 및 그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하여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4. 학회와 관련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5. 학회와 관련된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나 관리책임자가 부의(附議)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 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편집담당 부회장, 편집위원장, 학술위원장, JPE 편집이사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간사는 위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장의 임기는 2년,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간사)** 위원회의 회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전임 위원장의 예우)** 전임 위원장은 임기 만료 후 당해 위원회의 고문으로 위촉되며, 회의 참석이나 출장 시 임원 처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의)**

- ① 위원회는 연구 부정행위가 접수된 후 4주 이내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는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18년 3월 17일부터 일부 개정 시행한다.